

[별표 2] <개정 2014.5.14>

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(제4조제2항 관련)

구분	대분류	세구분	세분류	유발계수
1	근린생활시설	가	슈퍼마켓, 일용품소매점	1.68
		나	일반음식점	2.56
		다	골프연습장	5.00
		라	정구장, 헬스클럽, 볼링장, 실내낚시터, 탁구장, 체육도장, 실내골프장	1.68
		마	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, 기타 근린생활시설	1.44
2	의료 시설	가	종합병원	2.56
		나	병원, 의원, 요양소, 진료소	1.34
3	교육연구시설	가	교육원, 연구원, 직업훈련소, 학원(자동차학원 제외)	1.42
		나	도서관, 연구소(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, 계량계측소 포함)	0.90
4	운동시설	가	체육관(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)	1.68
5	업무시설	가	일반업무시설(오피스텔포함)	1.80
6	숙박시설	가	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의 호텔, 가족호텔, 휴양 콘도미니엄	2.62
		나	일반숙박시설,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	1.16
7	판매시설	가	도매시장	1.81
		나	백화점, 쇼핑센터(대규모 소매점), 할인점, 전문점	10.92
		다	소매시장, 상점	1.81
8	위락시설	가	유흥주점,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	3.84
		나	특수 목욕탕	2.16
9	관람집회시설	가	공연장 : 극장, 영화관, 연예장, 음악당, 커스장	3.55
		나	집회장 : 회의장, 공회장, 예식장	4.16
		다	관람장 : 운동경기관람장(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), 경마장, 자동차경주장	3.55
10	전시시설	가	전시장 :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기념관, 산업전시장, 박람회장	3.55
		나	동식물원 : 동물원, 식물원, 수족관	0.72
11	공장시설	가		0.47
12	창고저장시설	가	창고, 하역장시설	0.61
13	운수시설	가	여객자동차터미널, 화물터미널	5.56
		나	철도역사(민자역사)	4.13
		다	공항시설, 항만시설	1.81
14	자동차 관련시설	가	매매장, 정비공장, 세차장, 폐차장	1.49
		나	운전학원, 정비학원	0.88
15	방송통신시설	가	방송국, 촬영소	1.89
		나	전신전화국	1.00
16	관광휴게시설	가	공원,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, 휴게소, 어린이회관, 관망탑	3.10
17	기 타	가		1.20

비 고

1.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다.
다만,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의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.
2. 별표 2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 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,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.